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17개소), 연안항(18개소)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등 정비(안 제13조, 제15조)

- 「항만법」 제9조제2항, 제6항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의 고시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 「항만법」 제9조제2항,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기관을 “해양수산

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 「항만법」 제9조제6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변경

나.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정비(안 제16조)

「항만법」 제9조제7항과 관련 지자체가 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 “국가”를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 등으로 개정

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정비(안 제18조)

「항만법」 제10조제2항과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변경신청과 관련된 사무를 지자체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신고, 승인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정비(안 제19조, 제20조)

「항만법」 제10조제5항과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신고, 「항만법」 제10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신고의 기한 연장과 관련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마.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공고, 준공검사 정비(안 제21조, 제22조)

「항만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공고, 같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바.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정비(안 제23조)

「항만법」 제14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사.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정비(안 제24조)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비귀속 토지의 범위, 토지의 가액결정,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와 관련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아. 총사업비의 범위 정비(안 제25조)

「항만법」 제15조제3항 따른 총사업비 합산과 관련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자.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정비(안 제26조)

「항만법」 제15조제3항 따라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에 관련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개정

차. 분구의 설정,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정비(안 제29조, 제30조)

「항만법」 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 「항만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과 관련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

카.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사업계획, 지도·감독 정비(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

항만관리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지도·감독과 관련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

타. 항만시설의 사용 정비(안 제44조)

「항만법」 제40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파.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면제 정비(안 제45조)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와 관련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

하. 행정처분의 고시,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 통보 정비(안 제80조, 제81조)

「항만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사항의 고시 사무와 「항만법」 제86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 통보, 독촉통보와 관련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개정

거. 장기채류화물의 매각, 폐기, 귀속 정비(안 제82조, 제83조, 제83조)

「항만법」 제86조제2항 소유자가 화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그 화물의 매각 또는 폐기와 관련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개정

너.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정비(안 제87조)

「항만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과 관련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

더.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정비(안 제88조)

「항만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협의, 승인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

러.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정비(안 제90조)

「항만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

며. 권한의 위임 정비(안 제93조)

- 「항만법시행령」 제93조제2항의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 개발사무 등에 대한 위임규정 삭제
- 「항만법」 전부개정시 신규로 추가된 사무,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필요한 일부사무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의 지정·고시의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국가가”를 “관리청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전단,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또는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를”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제2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을 “관리청이 아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8호가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9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3.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신고 수리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보 및 세부목록의 별도 작성·공고
5.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6. 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5조제3항(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단에 따른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 허가

7. 법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8. 법 제18조에 따른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허가
9. 법 제19조에 따른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수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의 제정
11.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변경등록
12.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
1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14. 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임대계약체결에 관련 사항
15.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사항
16. 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7호, 제8호는 제외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

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
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또는”으로,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
하는 경우”를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
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해양수산부장관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① ----- ----- ----- ----- ----- ----- ----- ----- <u>관리청에</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u>관리청</u> ----- ----- ----- -----.
④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④ ----- ----- ----- ----- ----- ----- ----- -----

평면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2. ~ 4. (생략)

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략)

2. 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사업. 다만, 국가가

----- 관리청-----
-----.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

-----.

1. -----
----- 관리청-----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

----- 국가 또는 시·도-----

-----.

1. (현행과 같음)

2. -----
----- 관리청

투자비를 보전(補填)하지 않는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비관리청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만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계별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은 전 단계 사업의 준공일 전에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 대상

의 -----
-----.

3. ----- 관리청-----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 관리청-----
-----.

-----.

1. ~ 8.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

-----.

-----.

③ 관리청-----

관리청

④

1. ~ 6. (현행과 같음)

7. _____

_____ 관리

청_____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① (생략)

②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으로서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생략)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u>해양수산부장관</u>이 인정하는 경우	2. ----- ----- ----- <u>관리청</u> ----- -----
제21조(준공 공고) <u>해양수산부장관</u>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관보</u>에 게재하거나 <u>해양수산부</u>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준공 공고) <u>관리청</u>----- ----- ----- ----- <u>관보</u> 또는 <u>공보</u>에 게재하거나 <u>해양수산부</u> 또는 시·도-----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준공검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u>해양수산부장관</u>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준공검사) ----- ----- <u>관리청</u>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u>해양수산부장관</u>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비	제23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u>관리청</u>----- ----- ----- -----

관리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 3. (생략)

제2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생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
----- 국가 또는 시
· 도-----
-----.

1. ----- 국가 또는 시
· 도-----

2. (현행과 같음)

② -----

----- 관리청-----

-----.

③ 관리청-----

해당할 때에는 다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해당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1. ~ 3. (생략)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사일로(국가가 소유하는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및 가스저장시설

3. ~ 5. (생략)

6. 지원시설. 다만,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 (제93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조성한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7. (생략)

8. 그 밖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국가 또는 시·도-----
-----.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또는 시·도----

3. ~ 5. (현행과 같음)

6. -----
----- 관리청-----

----- 지방해양수산청장 -----

-----.

7. (현행과 같음)

8. -----

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
관이 인정하는 시설

⑤ (생 략)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
는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
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
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
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생 략)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에서 규정한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
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
금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가
중평균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
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말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고
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
우 또는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
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 국가 또는 시·도-----
----- 관리청-----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 관리청-----
-----.

----- 관리청-----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및 항만시설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

2. ~ 4. (생략)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

--.

7. -----

-- 국가 또는 시·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국가 또는 시·도-----

2. ~ 4. (현행과 같음)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

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항
만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
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
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
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1. 국가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
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 사용료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29조(분구의 설정)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
(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위치 및 구역과 취급
화물 및 입항·출항 선박의 종
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
리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
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

-----.

1. 국가 또는 시·도-----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분구의 설정) 관리청-----

-----.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①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 3.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의 관리·경비 및 보안 등의 업
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항만
관리법인을 지정한다.

③ (생략)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항만관리법인은 매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
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
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지체 없이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
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해양

-----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1. ~ 3.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

-----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
출해야 하며-----

-----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제32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

----- 관리청에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제104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주한 항만개발사업을 시공하는 자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

관리청이 아닌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

가. 관리청-----

나. -----

발사업(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9. (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
자가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
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③ (생략)

제80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 내용, 행
정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관보
에 고시해야 한다.

② (생략)

제81조(반출 통보 등) ① 해양수
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 본
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

----(국가 또는 시·도----

9. (현행과 같음)

② -----

----- 관리청

-----.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관보

또는 공보-----.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반출 통보 등) ①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수량, 최초 장치
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
하지 않을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
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
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
1항 본문에 따른 독촉통보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해야 한다.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
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
해야 한다.

1. ~ 3. (생략)

-----.

② -----

-- 관보 또는 공보 -----

-----.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
에서 매각비용, 각종 세금과 공
과금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
다.

⑤ (생략)

제83조(장기채류화물의 폐기) 해
양수산부장관은 장기채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
다.

1. ~ 5. (생략)

제84조(장기채류화물의 국가 귀
속)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채류화
물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7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93
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
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제93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분이나

4. -----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

--.

⑤ (현행과 같음)

제83조(장기채류화물의 폐기)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

--.

1. ~ 5. (현행과 같음)

제84조(장기채류화물의 국가 귀
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
--- 국가 또는 시·도-----.

제87조(재결의 신청) ①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밖의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3. 해양수산부장관,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생략)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행정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90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4. (현행과 같음)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

-----.

제90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인가
· 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
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
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
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제93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
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
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

제9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5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
로 한정한다)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의 결정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공
시설등의 귀속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1.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의 변경허가(법 제9
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
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3.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
미한 변경의 신고 수리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보 및 세부
목록의 별도 작성·공고
5.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6. 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5조제3항(법 제60조제1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단에 따른 귀속
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7. 법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매
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
치
8. 법 제18조에 따른 전용목적

	<u>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 허가</u>
<u><신 설></u>	9. 법 제19조에 따른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수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u><신 설></u>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의 제정
<u><신 설></u>	11.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리권의 등록·변경등록
<u><신 설></u>	12.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
<u><신 설></u>	1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u><신 설></u>	14. 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임대계약체결에 관련 사항
<u><신 설></u>	15.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사항
<u><신 설></u>	16. 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

	<u>항 제7호, 제8호는 제외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921